



**Mukilteo** School District

## 학생 - 시리즈 3000

### 괴롭힘, 위협, 불링 금지 - 절차 - 3216-P

#### A. 서론

Mukilteo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를 존중으로 대하고 아무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중을 장려하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 학교 후원 행사에서 학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괴롭힘, 위협, 불링을 당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과정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 것은 교육구 정책 위반입니다. 학교 커뮤니티에는 모든 학생, 교직원, 학교 위원회 위원, 계약직원, 무급 자원봉사자, 가족, 후원자 및 기타 방문자가 포함됩니다. 학생은 자신의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별 표현 또는 성적체감 등의 성적 성향, 정신 또는 신체 장애 또는 기타 부각되는 특성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을 보거나 듣거나 목격한 교직원 또는 그러한 행동을 당했다고 신고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괴롭힘을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 B. 정의

가해자란 학생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불링하는 데 연관된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커뮤니티의 기타 일원입니다.

괴롭힘, 위협, 불링이란 의도적인 전자, 서면,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행동으로,

-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해가 되고 학생의 자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학생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영향이 있는 행위입니다.
-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만연적이어서 교육 환경에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 질서 정연한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영향이 있는 행위입니다.

“학생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행위는 피해자 학생의 성적, 출석률, 행실, 친구들과의 교류, 활동 참여 상태, 기타 요소를 판단함으로써 결정합니다.

괴롭힘, 위협, 불링에 해당되는 행위는 전자, 서면, 언어 또는 신체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나 이미지에 관계없이 욕설, 유언 비어, 농담, 풍자, 비난하는 언사, 그림, 만화, 장난, 따돌림, 신체적 공격이나 협박, 몸짓 또는 개인이나 단체와 연관된 행위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에 기반이 되는 특성을 실제로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보복은 가해자가 불링 사건을 신고한 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불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직원에는 교육자, 행정관, 상담교사, 양호교사, 식당 직원, 관리인, 버스 운전사, 체육 코치, 과외 활동 지도 교사, 구분된 직원, 대체 또는 임시 교사, 자원 봉사자, 전문 보조원(직원, 계약직원 모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란 괴롭힘, 위협, 불링이 가해진 학생을 말합니다.

### C. 기타 관련 법률

이 절차는 RCW 28A.300.285 – 괴롭힘, 위협, 불링 방지에만 적용됩니다. 성희롱이나 차별과 같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타 법과 절차도 있습니다.

이 절차의 어떠한 내용도 학생, 학부모/보호자, 학교 또는 교육구가 지역, 주정부나 연방정부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룹(클래스)에서 해당인의 성별이나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괴롭힘 또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D. 예방

### 보급

교육구는 각 학교와 교육구 웹사이트에 괴롭힘, 위협 및 불링 신고, 학교 행정관에게 신고 시 이름과 연락처, 교육구 준수 사무관의 이름과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 교육구의 정책과 절차는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각 학교에 비치됩니다.

교육구는 정책 및 절차 요약서가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핸드북 형태로 제공되고, 학교 및 교육구 사무실 및/또는 복도에 비치되며 또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합니다.

### 교육

매년 학생들은 괴롭힘, 위협, 불링의 인식과 예방에 관련된 연령에 맞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정보에는 사건 신고서와 웹 기반 양식 링크가 포함됩니다.

### 교육

교직원들은 교직원의 역할과 책무, 공용 구역 모니터 방법, 교육구 사건 신고서 사용 방법 등 교육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연례 교육을 받습니다.

### 예방 전략

교육구는 개인, 교실, 학교, 교육구 수준 접근법 등 다양한 예방 전략을 이행합니다.

교육구는 가능 시, 사회적 역량 증가, 학교 풍토 개선, 학교 내 괴롭힘, 위협, 불링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증거 기반의 예방 프로그램을 이행합니다.

## E. 준수 사무관

학생 서비스 이사, 교육구 준수 사무관은

1. 괴롭힘, 위협 및 불링에 대한 교육구의 기본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2. 신고 사항 해결 시 교장 또는 지명자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3. 모든 사건 신고서, 징계 회부서, 조사 결과가 명시된 학부모 대상 서신을 수신합니다.
4. 학생 정보 시스템의 사용에 익숙해야 합니다. 준수 사무관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행동 양식이나 우려 분야를 확인합니다.
5. 조사가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조사 과정을 감독하여 정책과 절차가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6. 교직원과 학생의 교육 필요성을 평가하여 교육구 전반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직원들이 연례 가을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7. OSPI 학교 안전 센터에 매년 정책 또는 절차 업데이트 사항이나 변동 사항을 알립니다.
8.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을 경험한 경우, 준수 사무관은 교육구 직원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사이에서 회의를 주선하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직원 중재

모든 교직원은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을 목격하거나 신고를 받을 시 중재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사건이나,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사건은 이 절차 하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신고서 제출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학생 또는 학생이 해결되지 않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의 대상이 되어왔거나 되어 왔을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거나 그러한 통지를 받은 학교 커뮤니티 내의 기타 사람은 모든 교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링 해결 – 신고서

##### 1단계: 사건 신고서 제출

피해 학생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은 사건 신고서에 자신의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은 익명, 기밀로 제출될 수 있고 또는 신고 학생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비기밀).

## 신고자 상태

### a. 익명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서만으로는 혐의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익명, 미서명 신고서를 수령하기 위해 신고서 박스를 확인하거나 기타 방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서에 대한 가능한 대응으로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위치의 모니터를 강화하거나 특정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b. 기밀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신고된 학생 및 기타 학생에게 기밀로 유지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기밀 신고서만으로는 혐의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 c. 비기밀

신고자는 비기밀로 신고서를 제출할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비기밀로 신고하는 것에 동의하는 신고자에게는 교육구가 사건에 관련된 모든 개인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교육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정당한 과정상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통지되나, 이 시점에도 정보는 조사 동안 및 후에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 정책과 절차의 비보복 규정을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신고자와 증인을 보호합니다.

## 2단계: 사건 신고서 수령

모든 교직원은 구두 또는 서면 신고서를 수령할 책임이 있습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의 구두 또는 서면 신고서를 처음으로 수령한 교직원은 가능 시 사건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사건이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경우, 또는 사건이 괴롭힘, 위협이나 불링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 절차 하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에 대한 모든 신고서는 교육구 사건 신고서에 기록되고, 교장이나 지명인이 사건의 주체가 아닌 이상, 학교장이나 지명인에게 제출됩니다.

3단계: 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및 불링 조사

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의 모든 신고서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신고 및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d. 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을 포함한 사건 신고서를 수령하면, 학교 또는 교육구 지명인은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고자에게 분명하고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교육구는 즉시 법집행 기관으로 연락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e. 조사 과정 중에 교육구는 합리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 사건이 신고자와 혐의 가해자 사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할 경우, 교육구는 관련 학생을 위한 안전 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는 신고자 및/또는 혐의 가해자의 교실, 점심 시간, 버스 자리 배치 변경, 신고자를 위해 안전인으로서 행동할 직원 지정, 혐의 가해자의 일정 및 신고자에 대한 접근 기회 변경을 비롯해 기타 방책이 있습니다.
- f. 학교 지명인은 사건 신고서를 수령하고 수업일 기준으로 2일 내에 관련 학생의 가족에게 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가족이 교육구의 괴롭힘, 위협 및 불링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 g. 학생 및 해당 교직원(심리전문가, 상담교사 또는 사회 복지사)과의 상담 후에, 교육구가 신고자나 혐의 가해자의 부모/보호자를 관여시키는 것이 해당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증거를 가지는 흔치 않은 경우에, 교육구는 해당 괴롭힘, 위협 및 불링 조사 시 학부모/보호자에게 초기에 연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 학교 직원이 학생이 학대나 유기 대상이라고 의심할 경우, 직원들은 교육구 정책에 따라 의심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 h. 조사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신고자와의 면담
  - 혐의 가해자와의 면담
  - 신고자 또는 혐의 가해자와 관련된 과거 신고 검토
  - 제기된 사건에 대해 알 수도 있는 다른 학생이나 직원들과의 면담
- i. 학교장이나 지명인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기타 단계가 취해져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j. 조사는 이행 가능 즉시 완료되나, 일반적으로 최초 신고일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조사 완료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 및/또는 학생에게 주간별로 업데이트 상황을 제공합니다.
- k. 조사가 완료되고 준수 사무관에게 제출된 뒤 수업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학교장이나 지명인은 신고자 및 혐의 가해자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답변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결과
  - 제시된 주장의 사실 여부
  - 정책 위반 여부
  - 신고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항소 절차

학생 기록의 기밀성과 관련된 법적 요건으로 인해, 위반 사항 신고를 위해 피해 학생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나 지명인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모든 조치된 징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서한으로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기로 할 경우, 교육구가 해당 학생 및 적합한 교직원(심리전문가,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과의 상담을 통해 가족을 관여시키는 것이 신고자나 혐의 가해자에게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지 않은 이상, 서신은 등기 우편물 수령 통지 요청과 함께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 및 혐의 가해자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전송됩니다. 전문 학교 직원이 학생이 학대나 유기의 대상이라고 의심할 경우, 직원들은 의무 신고자로서 교육구 정책에 따라 의심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건이 학교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학교장이나 지명인은 교육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4단계: 가해자 시정 방침

조사 완료 후, 학교나 교육구 지명자는 필요한 시정 방침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정 방침은 최대한 빨리 수립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나서 수업일을 기준으로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학생 징계를 포함하는 시정 방침은 교육구 정책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기된 가해자가 징계 이행에 대해 항소를 할 경우, 교육구는 이의제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당한 과정 고려 사항이나 합법적 명령에 따라 징계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학교장이나 학교장 지명인이 학생이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에 대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를 포함한 시정 방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단계: 피해 학생의 항소 권리

12. 신고자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서면 결정서를 수신하고 수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교육감이나 해당 지명인에게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해당 지명인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항소 통지서를 수령하고 수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항소 이점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13. 피해 학생이 교육감에 대한 최초 항소 이후에도 불만족 상태인 경우, 학생은 신고자가 교육감의 서면 결정서를 받은 해당일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5일째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학교 위원회 간사에게 항소 서면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학교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4. 학교 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학교 위원회에 서면 통지서가 제출되고 나서 수업일 기준으로 10일째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학교 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고 수업을 기준으로 5일째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항소 이점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처리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교육구 결정이 됩니다.

#### 6단계: 징계/시정 조치

교육구는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의 결과에 대해 해당 당국 내에서 즉각적이고 공정한 시정 방침을 취합니다.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서 시정 방침에는 상담, 교육, 징계 및/또는 법집행부 회부 등이 있습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시정 방침은 다양하고, 행위의 성격, 학생의 발달 연령 또는 문제 행위 및 이행에 대한 학생의 이력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학생 징계를 포함하는 시정 방침은 교육구 정책에 따라 시행됩니다. 행위가 공공의 성격을 띠거나 학생 또는 방관자 단체와 연관이 될 경우, 교육구는 전교적인 교육 또는 기타 활동을 강력히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이 정책이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구는 최대 해고에 이르는 고용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7단계: 피해 학생 지원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교육구의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고, 해당 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은 해당 경우에 따라 해결 및 시정됩니다.

#### 면책/보복

교직원,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학생, 목격자 또는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 혐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기타 사람에 대한 앙갚음이나 보복에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은 금지되며 적절한 징계가 뒤따릅니다.

#### 기타 자료

학생과 가족은 교육구의 신고 및 항소 절차를 괴롭힘, 위협 및 불링 주장에 대한 첫 대응 방편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의 어떠한 내용도 학생,

학부모/보호자, 학교 또는 교육구가 지역, 주정부, 연방정부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룹(클래스)에서 해당인의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 신고는 다음의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OSPI Equity and Civil Rights Office  
360.725.6162  
이메일: [equity@k12.wa.us](mailto:equity@k12.wa.us)  
[www.k12.wa.us/Equity/default.aspx](http://www.k12.wa.us/Equity/default.aspx)
- 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800.233.3247  
[www.hum.wa.gov/index.html](http://www.hum.wa.gov/index.html)
-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gion IX  
206.607.1600  
이메일: [OCR.Seattle@ed.gov](mailto:OCR.Seattle@ed.gov)  
[www.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
- Department of Justice Community Relations Service  
877.292.3804  
[www.justice.gov/crt/](http://www.justice.gov/crt/)
- Office of the Education Ombudsman  
866.297-2597  
이메일: [OEOinfo@gov.wa.gov](mailto:OEOinfo@gov.wa.gov)  
[www.governor.wa.gov/oeo/default.asp](http://www.governor.wa.gov/oeo/default.asp)
- OSPISafety Center  
360.725-6044  
[www.k12.wa.us/SafetyCenter/BullyingHarassment/default.aspx](http://www.k12.wa.us/SafetyCenter/BullyingHarassment/default.aspx)

기타 교육구 정책 및 절차

이 정책이나 절차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문서에 정의되어 있으나 기타 교육구 또는 학교 규정에 의해 금지되고 또는 금지될 수 있는 괴롭힘, 위협 또는 불링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합한 행위에 대한 징계 또는 구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습니다.

법률 참고문헌:

[RCW 28A.300.285](#) 괴롭힘, 위협, 불링 방지

[RCW 28A.640.020](#) 차별 근절을 위한 규정, 지침 — 범위 — 성희롱 정책

[RCW 28A.642](#) 차별 금지

[RCW 49.60.010](#) 차별 금지법

2011년 6월 13일